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73호, 2008.12.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1998.07.06 (건설교통부훈령 제210호)

개정 2000.11.20 (건설교통부훈령 제302호)

개정 2008.12.16 (국토교통부훈령 제173호)

개정 2013. . .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 16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상수도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가스시설

라. 통신시설

마. 전기시설

바. 송유관시설

사. 난방열관시설

아.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2. “지하시설물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이하“중

양협의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의 통합관리 및 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에 따른 관련기관간의 의견조정
3.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 하는 안건

제4조(중앙협의회구성 등)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환경부·국토지리정보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자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주식회사 케이티·한국가스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처장급이상(1급)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중앙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전심의) ① 지하시설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주체가 중앙협의회에 안전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안전 30부를 회의 개최 14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안전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시설물관리주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중앙협의회 구성기관은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중앙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③ 간사는 중앙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위원발언요지

6. 기타 중요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회의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